



제 417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 등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99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 등 일시적 등록 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 ...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 등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서 소상공인 등이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예외를 두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3. ----- ----- 경우. 다만, 「 <u>소상공인기본법</u> 」 제2조에 따른 <u>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7조¹⁾는 어장정화·정비업²⁾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거짓 등의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코로나19에 이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이 인력·자본 등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³⁾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

1) 「어장관리법」 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①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어장정화·정비업 현황은 참고자료1 참조

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을 계속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⁴⁾,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제재처분 유예의 대상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⁵⁾ 등⁶⁾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상공인 외의 유예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논의와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이에 대하여 소상공인 등 등록 기준 미달 시 처분 유예와 관련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하위 법령 마련 시에 유예사유를 규정하면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 외에 소기업⁶⁾도 유예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유예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3)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 대통령령에 정할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검토하는 중으로,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요구되고 있는 ‘기술인력 보유’ 요건의 적용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우 기술인력 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4) 정부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등 영업자 규제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22. 6.~9.)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제재처분 유예 정비안을 마련(’23. 5. 31.)하여 제21대 국회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이후 제22대 국회에 동 개정안을 포함한 총 13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제출하였음. 법률별 세부사항은 [참고자료2] 참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6)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의 대상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동 개정안은 법률상 기준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로서 「골재채취법」, 「주택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해양조사와해양정보활용에관한법률」 등의 법령에서 일시적으로 각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면서 소상공인에 한정하여 그 유예기간을 확대(50일→180일)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어장정화·정비업 관련 제재처분의 유예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등록기준 미달 제재처분 유예 관련 유사 입법례]

법령	등록기준 미달 제재처분 유예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

법령	등록기준 미달 제재처분 유예
	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3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 관계 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유예대상을 소상공인 외의 자까지 확대할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예대상을 소상공인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2

자료1

어장정화·정비업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어장정화·정비업 현황	■ 전국 시·도에 등록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는 92개('22 기준)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현황 > (단위 : 개소, 척)																																	
	<table><tr><th>시·도</th><th>업체수</th><th>선박·부선</th></tr><tr><td>계</td><td>92</td><td>199</td></tr><tr><td>충청남도</td><td>25</td><td>48</td></tr><tr><td>전라남도</td><td>22</td><td>44</td></tr><tr><td>경상남도</td><td>17</td><td>48</td></tr><tr><td>전라북도</td><td>11</td><td>25</td></tr><tr><td>인천광역시</td><td>6</td><td>12</td></tr><tr><td>제주특별자치도</td><td>4</td><td>8</td></tr><tr><td>경상북도</td><td>3</td><td>6</td></tr><tr><td>부산광역시</td><td>2</td><td>4</td></tr><tr><td>강원특별자치도</td><td>2</td><td>4</td></tr></table>	시·도	업체수	선박·부선	계	92	199	충청남도	25	48	전라남도	22	44	경상남도	17	48	전라북도	11	25	인천광역시	6	12	제주특별자치도	4	8	경상북도	3	6	부산광역시	2	4	강원특별자치도	2	4
	시·도	업체수	선박·부선																															
	계	92	199																															
	충청남도	25	48																															
	전라남도	22	44																															
	경상남도	17	48																															
	전라북도	11	25																															
	인천광역시	6	12																															
제주특별자치도	4	8																																
경상북도	3	6																																
부산광역시	2	4																																
강원특별자치도	2	4																																
■ (영업 범위) ①어장의 퇴적물 및 폐기물 수거·처리, ②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③어장 내 시설물 재배치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table><tr><th>구 분</th><th>등 록 기 준</th></tr><tr><td>1. 선박</td><td>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td></tr><tr><td>2. 기술인력</td><td>「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명 이상.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td></tr><tr><td>3. 자본금</td><td>가. 2013년 10월 31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억원 나. 2013년 11월 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억원</td></tr><tr><td>4. 시설·장비</td><td>○ 인양장비 :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 기타 :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td></tr></table>	구 분	등 록 기 준	1. 선박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2.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명 이상.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자본금	가. 2013년 10월 31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억원 나. 2013년 11월 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억원	4. 시설·장비	○ 인양장비 :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 기타 :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구 분	등 록 기 준																																
	1. 선박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2.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명 이상.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자본금	가. 2013년 10월 31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억원 나. 2013년 11월 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억원																																	
4. 시설·장비	○ 인양장비 :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 기타 :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2

법제처 일괄 추진 법률안 현황

연번	법률안	대상 업종	소관 부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13개 법률 일부개정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생산업자	산림청
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병원	산림청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사업법인	산림청
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산림청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환경부
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사업자	기상청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환경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환경부
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검사대행자	환경부
1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국토교통부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국토교통부
1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정화·정비업	해양수산부
1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관리업무) 위탁관리업	해양수산부

* 자료: 법제처